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44

발의연월일: 2020. 8. 13.

발 의 자: 문진석·박찬대·서영석

송갑석 • 윤재갑 • 이상헌

이정문 • 인재근 • 정일영

조오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 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현재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, 인력난으로 인해 의료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공공의료서비스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의료법인의 경우, 의료법에 따라서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고,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이 가능하나, 발생한 이윤이 직원에게 투입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 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의2). 법률 제 호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 중 "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"를 "중소기업(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) 청년근로자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의2(중소기업 청년근로자	제35조의2(중소기업 청년근로자
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	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
설치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	설치)
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	중소기업(「의료법」 제33조제2
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	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
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	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법인 및
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	같은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
인력 성과보상기금(이하 "성과	른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
보상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	정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)
다.	<u> 청년근로자의</u>
	,